

학교 생활규정



원 광 중 학 교

1. 학생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원광중학교 학생 생활규정'이라 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3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4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교내외 시설물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중 시간을 준수한다.
-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⑥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⑦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8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금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식생활 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⑦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① 라이터, 폭죽, 머리 미용기구 등의 인화 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접착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제10조 【두발 및 복장 등 용모】¹⁾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는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율 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명찰은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탈부착한다.
 -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하면 부착물을 단다.
 -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엔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한다.
 -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엔 맞는 것으로 한다.
 - 6.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염색·파마는 금지한다.
 - 7.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한다.
 - 8. 교내에서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9.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동·하·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동복 : 11월 1일 ~ 4월 14일
 - 2.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 3. 춘추복: 4월 15일 ~ 5월 31일, 10월 1일 ~ 10월 31일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 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1조 【동아리 활동】

- ① 학생은 방과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치활동】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1)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⑦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⑧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제13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4조 【전자기기 사용】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압수의 요건과 기간,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⑥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 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교내외생활】 학생의 교내외생활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걸맞게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또는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⑥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해로운 술, 담배, 접착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⑧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⑨ 자전거 등교 시 교문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며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⑩ 교내외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적발 시 선도위원회를 통해 흡연자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생선도위원회

제16조 【학생선도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선도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임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7조 【선도위원회 소집 및 기능】

- ① 선도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선도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 생활교육

제19조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20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 개선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 위원회 구제 신청

제21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어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와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및 청소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 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②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친구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한 행동
 4.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제23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단, 담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징계

제24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선도위원회를 거쳐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

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생활 담당 부서,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자체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가정학습이 가능함.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7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듣는다.

② 선도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선도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8조 【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① 학교장은 선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위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제30조 【목적】

- ①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②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 ③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학교규칙 준수 문화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운영방법】

- ① 3단계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한다.

1단계 약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담임교사 중심 학교 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 학교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 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	--

2단계 약속준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약속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활용 ▪ 비폭력 대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준수 캠페인 전개
---	---	--

3단계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이 존중되는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선도 적용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	---

- ②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은 지양한다.
- ③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32조 【기타 사안】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2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체 필요 시
	3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4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과제 중심 활동	5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6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7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8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9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10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참여 중심 활동	11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2	웰빙 도우미 활동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13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4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5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6	Wee 센터 활용하기	이용 방법, 활동 내용
	17	미술 치료 프로그램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18	연극 치료 프로그램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19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시간, 점심시간, 귀가시간)
	20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규정 약속	21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22	학생 자치법정	학생 자치법정의 조직, 운영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3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 수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와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본교는 교감, 학생 인성안전부 부장, 학생 인성안전부 기획 또는 학교규칙 제·개정 담당교사, 학생회 회장(1명), 학생회 부회장(2명), 학부모회 임원(2명) 등 8명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전 회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서 첨부
 4. 학부모 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5. 학생회 및 학급회장 대의원의회의 의결서 첨부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이한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 △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의회의, 설문조사(가정통신문 발송) 등
 - △ 학부모 : 학부모 회의, 설문조사 등
 - △ 교원 : 부서협의회, 학년별 협의회, 전체 교직원 회의 등
 - △ 학생, 학부모, 교원 : 토론회 실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시안 마련 및 보고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제·개정 위원장은 신규 대표표 형식으로 작성된 제·개정 최종 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36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 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 2006. 2. 14 개정
- 2. 2009. 2. 17 개정
- 3. 2011. 5. 2 개정
- 4. 2014. 9. 3 개정
- 5. 2019. 7. 17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첨 1】 제10조 원광중 귀공자의 용의 복장 소지품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유의사항	
교 복	착용 시기	○ 동 복 : 11월 01일 ~ 04월 14일 ○ 하 복 : 06월 01일 ~ 09월 30일 ○ 춘추복 : 04월 15일 ~ 05월 31일 ○ 춘추복 : 10월 01일 ~ 10월 31일	기후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동복	○ 동복 상의(군색), 바지(회색), 셔츠(흰색), 조끼(감색)를 입는다. ○ 셔츠, 넥타이, 바지를 착용한 후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셔츠 위 후드티, 맨투 맨 등 자율적 허용 (어두운 계열)
	하복	○ 생활복 상의 안에 속옷을 입는다. ○ 하복 대신에 여름 생활복을 입는다.	
	춘추복	○ 바지(회색), 셔츠(흰색), 조끼(감색)를 입는다.	셔츠 위 후드티, 맨투 맨 등 자율적 허용 (어두운 계열)
	명찰	○ 교내에서는 교복의 왼쪽 가슴 부분에 부착한다. (탈부착)	
두 발	○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염색·파마는 금지한다. ○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신 발	신발	○ 학생 신분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다.	
	실내화	○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실외에서는 금지한다.	
휴 대 품	신주 머니	○ 자율적으로 휴대한다.	
	가방	○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휴대폰	○ 원칙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 ○ 필요시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담임이 보관할 수 있다.	
체 육 복	○ 체육교과 시간에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지정복 있음	
기 타 사 항	1. 실내에서 목도리, 장갑, 외투의 착용을 자제한다. 2. 반바지나 체육복으로 등·하교하지 않는다. 3. 각종 장신구(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사용을 금한다. 단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허용한다. 4. 자전거 등교 시 교문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며 교내에서 타지 않는다. 5. 양말은 반드시 착용한다. 단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예외를 허용한다.		

[별첨 2] : 제15조 흡연자 처리규정

순	선도 내용	적발 시
1차 적발	교내봉사활동 5일	학부모, 담임통보
2차 적발	사회봉사활동 4일	학부모, 담임통보
3차 적발	출석정지 3일	학부모, 담임통보

[별첨 3] : 제25조 선도기준

선도 기준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9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1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12	인장 또는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14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수업	16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18	수업 거부를 주동한 학생	○	○	○	○
	1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20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1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22	무단결석, 조퇴, 외출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3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4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25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26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물	2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8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2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퇴폐 행위	30	도박을 한 학생	○	○		
	31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2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3	불량서적(음란서적)을 탐독한 학생	○	○	○	
	34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	○	
	35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어지럽게 한 학생	○	○	○	
금품	36	부녀자나 노약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37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집단	38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39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40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어지럽게 한 학생		○	○	○
	4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4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한 학생	○	○	○	
기타	43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44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45	선도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	○	○	○

2.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원광중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 하며,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유예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대의원회

제5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위원회 임원,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동아리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6조 【의장】

-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제21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 위원 1/2 이상과 학생회장, 학교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 【업무 및 권한】 다음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학생위원회에서 토의에 부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8.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과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으면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10조 【의결】

-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면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위원회에 전달한다.
-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과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격상실】

-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1. 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3장 학생위원회

제1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제12조 【임무】

-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와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 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빈자리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13조 【선출】

- ① 정·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 때문에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14조 【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학년 초(3월 초)부터 학년 말(2월 말)로 한다.

제15조 【자격상실】

-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생회 활동

제16조 【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 각 부·부장과 차장 2~3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팀 운영

6. 학생 음부즈맨제도 운영
7. 학생회 담당교사 추천
8. 학생과 관련된 안건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9.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10.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회의 및 소집】

-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하면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조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부서】

-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호와 같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
 1. 학생자치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사항
 2. 학습지원부 : 학교 면학 분위기 만들기 및 기타사항
 3. 바른생활부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만들기 활동 및 기타사항
 4. 건강생활부 : 체육활동 및 기타사항
 5. 자연과학부 : 각 부서 활동 IT 지원
 6. 선행활동부 : 분실물 관리 활동 및 학생자치실 물품 관리
 7. 문화활동부 : 학교 청결을 위한 문화 만들기 및 모금 활동 장려 활동
 8. 우 애 부 : 학교 질서지도 안내 및 통학버스안전 도우미

제4장 학급회

제20조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따라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위원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따르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23조 【협의 및 의결】

-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과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24조 【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25조 【자격상실】

- ① 학급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급 정 부회장이 자격을 잃었을 경우, 징계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지체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학급 정 부회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제26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적용】

- ① 이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2명
- ② 회장단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은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 ③ 학급회장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회장단 선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출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출 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를 한 후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 순으로 한다.
 2.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을 결선 투표한다.

4. 선출된 회장단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함)는 현 학생회장과 학생위원회의 추천 때문에 6명 이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이상)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3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 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⑤ 학교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필수 반영한‘우리 학교 선거협약(가칭)’을 사전에 확정·홍보하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1. 합동토론회 횟수 및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 허용 여부
 2. 선거비용 지원액 및 선거활동 규모 결정
 3. 입후보자 간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 및 협약
 4.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정선거감시단 운영 등
- ⑥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⑦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자가 확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2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2학기 중으로 하고 늦어도 선거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30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31조 【입후보 자격】

- ① 회장 후보는 3(2)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하며 부회장 후보는 3(2)학년 진급 예정자와 2(1)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한다.
-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32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 날까지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33조 【입후보 등록】

-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추천서 1통
 3. 서약서 1통
- ② 제①항 제1호 후보등록신청서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①항 제2호의 추천서는 선거권자 30명 이상(동일 학급 10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등록 무효 및 사퇴】

-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선거 운동】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우리 학교 선거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 ⑦ 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36조 【예산지원】

- ① 학교에서는 선거 운동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한 선거 운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선거 운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선거 운동비는 선거 포스터 5장, 선거 피켓 3개의 재료비용을 지급한다.
3.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7조 【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벽보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200cm 이내로 제한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38조 【소견 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우리 학교 선거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39조 【투표】

-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④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내준다. (단, 학생증을 분실 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내준다)
- ⑦ 전자투표를 하면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40조 【개표】

-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정해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한 것
 4. 어디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동일 투표지에)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41조 【당선】

-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이 당선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1명일 때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당선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 후보자가 둘 이상이면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한다.
-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선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한다.
 1. 부정선거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인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 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5.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일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3조 【보궐선거】

- ① 회장단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29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잃은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4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와 당선 of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직원 회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회의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선 무효, 임명 취소】

- ① 선거 운동 기간에 당선인이 35조 ④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즉시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해자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임명이 취소된다.

제46조 【보칙】

- ① 선거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 위원회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 2006. 2. 14 개정
- 2. 2009. 2. 17 개정
- 3. 2010. 3. 02 개정
- 4. 2011. 5. 02 개정
- 5. 2019. 7. 17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치회 및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 보 직 책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인/서명
회장				
부회장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인적 사항

후보직책	학번	성명	생년월일

2. 교사 추천

순	직책	성명	서명(인)
1			
2			
3			

3. 학생 추천

순	학번	성명	서명(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순	학번	성명	서명(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학년도

학생회장단 입후보 보호자 동의서

학생회장단 입후보 서약서

후보직책	성명	학년반	전화번호	비고

제()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20 학년도 원광중학교 학생회
(회장 / 부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반
선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선거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
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에 의한 당선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20 . . .

후보자 : (인/서명)

서약자 (사인)

보호자 : (인/서명)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원광중학교 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일체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 : (인/서명)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생회 회장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회장 후보		1.
		2.
		3.

학생회 부회장(2학년)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부회장 후보		1.
		2.
		3.

학생회 부회장(1학년) 후보 선거공약

	후보 성명	선거 공약
부회장 후보		1.
		2.
		3.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별 참관인 및
찬조 연설자 . 선거운동원 명단

1. 참관인 명단(3명 이내)

순	직 책	성 명	서 명 (인)
1			
2			
3			

2. 찬조 연설자 명단(1명)

순	직 책	성 명	서 명 (인)
1			
2			
3			

3. 선거 운동원(10명 이하)

순	직 책	성 명	서 명 (인)
1			
2			
3			
4			
5			
6			
7			
8			
9			
10			

위 학생을 학생회 회장 또는 학생회 부회장 후보의 참관인 및 찬조 연설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회 (회장/부회장) 후보: (인/서명)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퇴 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보 호 자 : (인)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 고

본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20 학년도(2학기) ~ 20 학년도 (1학 기)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자 등록 : . () ~ . ()
2. 입후보자 공고 : . ()
3. 후보자 소견 발표 : . () 강당 또는 운동장
4. 투표 : . ()
5. 당선자 공고 : . ()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본부(인성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원광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학년 반)
선거관리위원